

도박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체제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Police's Investigation System Against Gambling Crime

김정규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Joung-gyu Kim(kjg@nambu.ac.kr)

요약

최근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의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매우 치욕스럽지만 작금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게 잘못된 비난도 아닌 듯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낮은 경각심과 비범죄화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적절한 제재가 부족하였다.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도박단속을 효율성면에서 미흡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은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상 도박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범죄정보획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상에서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관할지역의 우범자에 도박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조치도 요망된다.

■ 중심어 : | 도박범죄 | 경찰수사 |

Abstract

Our country is criticized that is gambling republic recently. It is shy , but do not refute through present actual conditions. Gambling had increased and generated much problems in our country. But, gambling permitted socially. So, control system that do snow about gambling is insufficient. In the meantime, police's confrontation about gambling crime was not effective. Active confrontation about police's gambling crime must consist now. This research groped police's active confrontation way about gambling crime . police is improving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gambling crime and utilize in investigation.

■ keyword : | Gambling Crime | Police Investigation |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우리 국민 정서상 도박을 수용하는 태도가 관대했고 도박이 사교목적을 위한 하나의 놀이문화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도박중독의 주요원인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가장 높은 응

답을 보이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 한다[1].

도박이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는 내리는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경마, 경륜, 복권, 강원랜드, 경정 등 합법적 도박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도박은 관광산업이자 레저생활로써 그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이러한 세태는 도박행위의 불법성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하여 국민들의 도박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트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5년 국내 합법화된 사행산업의 총배팅액은 13조 8천억원을 넘었고 연간이용객수는 2540만명에 이르고 있다[2]. 이뿐만이 아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을 통해 밝혀진 성인오락실의 연간 매출액은 약22조에 달하였다. 상품권 등으로 지하경제에 흘러간 자금은 약 60조원으로 추정된다[3]. 사행성게임기가 불법화 되면서 상품권 발행사 도산 및 고의 부도 등으로 인한 상품권 피해는 약 3천억원이고 아케이드 게임장의 대량 폐업 및 실업자 양산, 개발업체 등 중소기업 연쇄 도산 등을 모두 합칠 경우 최소 피해액은 5조6천7백억원 이상이 되리라고 예상된다[4]. 우리경제 규모에서 과연 가능한 수치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사안이 이쯤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라 오명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5].

도박의 기능이 오로지 해악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하에서 도박은 사회적인 적대감을 해소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여 사회체제의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6].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도박실태는 구조-기능주의에서 주장하는 역할을 이미 초월하였다고 생각한다.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도박이 심각한 범죄를 양산해내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한 일련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행해지며 범죄의 대상 또한 가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른 우리나라의 도박에 대해 그 동안 우리 경찰은 과연 효율적인 단속을 하였는지 의문이 생긴다. 필자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경찰의 무사안일적 대처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를 위해서 단서확보는 필수적 요건이다. 경찰의 수사단서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삼는 것은 단연, 피해자의 신고이다[7]. 그런데 도박범죄는 그 속성상 “동의에 의한 범죄” 혹은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하여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도박범죄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타 범죄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이 도박범죄를 성공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도박범죄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도박범죄를 성공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수사체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도박범죄의 실체를 규범적 측면에서 명확히 하고, 둘째 도박범죄의 특성을 고찰한 후, 셋째 도박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범죄정보수집 측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II. 도박죄에 대한 논의

1. 개요

도박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재물을 걸고 서로 따먹기를 다투는 것이나 노름을 뜻한다. 도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원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BC 1600년경 이집트에서는 타우(Tau)와 세나트(Senat)라는 도박이 있었고 성서에는 제비뽑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투호, 상회 등의 원시적 도박이 있었다[8]. 전통놀이로 계승되고 있는 소싸움, 투게, 투견 등도 그 예가 된다.

이처럼 도박이 동서를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박에 대한 비범죄화 논란이 일면 수긍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도박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조항은 단순도박죄(제246조 1항), 상습도박죄(제246조 2항) 그리고 도박개장죄(제247조)이다[9]. 도박은 일단 범죄행위라는 위치에 놓여 있음은 자명하다.

2. 도박죄의 개념과 보호법익

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10]. 도박죄는 구성요건에 있어 2인 이상의 행위주체를 요하는데 행위주체가 2인 이상이면 반드시 관여자 전원에게 당해 범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고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그 성립을 인정해도 된다. 도박행위는 개시와 동시에 기수가 되는바, 재물의 수수 내지는 재물의 득실을 요하지 않는다[11]. 한편, 도박과 혼용되는 개념으로 사행행위가 있다. 도박과 사행행위는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

다. 다만 도박은 우연한 승부에 의해 결정되고 사행행위는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12].

한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일부개정 2002. 1. 26) 제2조에서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과 현상업(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그리고 기타 사행행위업(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박죄의 보호법익은 입법례에 따라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죄라는 견해 둘째, 공공도덕이나 도박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처벌하는 공안죄로 보는 견해 셋째, 건전한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근로라는 사회의 경제도덕이라는 견해이다[13]. 대법원은 판시를 통해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으로 보고 있다[14]. 또한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면실 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15].

3. 단순도박죄

단순도박죄는 재물을 가지고 도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상습도박죄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재물은 가액이 많고 적응이나 교환가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재물의 액수는 확정할 수 있으면 되고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외상도박도 단순도박죄가 된다. 승자가 패자에게 직접재물을 교부 할 필요는 없고 승자가

부담해야 할 어떤 비용을 패자가 대신 지불해도 상관없다[16].

4. 상습도박죄

상습도박죄는 도박을 상습적으로 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상습성이란 도박의 습벽을 말한다. 상습성의 판단에 있어 동종전과 만큼 중요한 자료는 없다. 하지만 도박의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될 수 있고, 일정기간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면 상습도박죄에 해당된다[17].

5. 도박개장죄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성립된다. 따라서 본죄의 객관적 구성요소는 도박개장이고 주관적 구성요소는 영리의 목적이다. 형법은 인간의 사행심 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법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도모함을 도박법 보다 더욱더 반도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아서 도박죄와는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둔 것이다[18]. 도박의 장소 제공이 필히적 이었는가 연속성을 가졌는가 문제가 된지 않는다. 도박개장죄의 기수시기는 도박장에서 실질적으로 도박을 하기 전 이라도 도박의 일시·조건을 포함한 도박계획을 수립하고 도박꾼을 모집하기 위해 특정인을 청하였으나 거절당한 때에도 성립한다[19]. 도박개장죄의 영리목적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말한다. 도박개장을 통한 간접적 이익을 영리목적으로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20].

한편, 게임기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형태는 [표 1][표 2]에 제시하였다[21].

표 1. 게임형태별 분류

구분	종류
카드게임	1라인5카드, 세븐오디오, 3라인5카드, 홀리게임
확투게임	고스톱, 섯다, 도리짓고맹 게임
짝맞추기게임	일반적 맞추기 게임

구분	종류
메달밀어내기게임	전자사자기계식 릴 부착 게임
경마류게임	경마경륜, 경정, 경건게임
빙고게임	대형, 소형빙고게임

표 2. 플랫폼별 분류

종류	유형
PC 게임	CD저장물을 컴퓨터로 이용
비디오 게임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PS2), X-BOX, 게임큐브 등
아케이드 게임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게임물
온라인 게임	인터넷 이용 게임
모바일 게임	휴대용전화기, PDA게임

6. 사이버 도박

사이버 도박은 온라인상에서 행하는 도박으로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제를 통해 전환시킨 전자화폐를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사이버 공간의 시공초월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이버도박이 사회전반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어 실제 도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일단 사이버환경에서 제공하는 도박에 접촉하면 빠른 속도로 중독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 도박의 규모 또한 실제 도박규모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다. 2003년 세계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통한 수입액은 약 63억 달러였다고 한다.[22] 우리나라에서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 도박의 사례로는 700억원대 기업형 사이버도박 업체가 있었다. 조사결과 관련 PC방의 수가 280여개였고 이용자는 6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23].

도박중독의 의학적 용어는 병적도박(pathological gambling)이다. 병적도박은 약물중독과 유사한 정도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장애를 지니게 된다[24]. 경찰의 도박범죄의 단속범위에 있어서 사이버공간을 실공간 이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의 사이버도박을 단속함에 있어 증거채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이버 도박은 전자화폐 등이 사용되므로 도금(賭金)거래를 밝히는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 기술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죄는 사이버상의 도박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 형법조문에 도박행위에 있어 장소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그러므로 사이버상에서도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이 오갔다면 도박죄가 되고 그 행위가 습벽에 의했다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사이버 도박의 도박개장죄에 있어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경우라면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외국에 특히, 도박이 합법화 되어 있는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도박개장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III. 도박범죄의 특성

1. 암수성

2005년 우리나라에서 도박범죄는 총 6,998건이 발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도박죄 6,413건, 상습도박죄가 465건, 도박개장죄 129건, 복표방행이 1건이었다. 도박범죄자로 기소된 인원은 도박죄 27,907명, 상습도박죄 2,293명, 도박개장죄 787명, 복표발매 2명이며, 구속된 자는 도박죄 122명, 상습도박죄 262명, 도박개장죄 99명 이었다 [25]. 만약 이상의 통계자료가 실제로 발생한 도박범죄의 상당 수를 적발한 수치라면 우리나라의 도박범죄 수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관련 자료를 보면 이상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2002년 국회 국정조사 자료에는 우리 국민의 7.3%가량이 병적도박 중세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26] 한국의 병적도박자 유병률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는 4.1% 조사되어 미국의 1.5%, 캐나다 0.9%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27]. 이처럼 높은 우리 국민의 병적 도박율을 고려할 때, 도박범죄가 공식통계에서 낮은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이유는 도박범죄의 속성상 피해 신고가 미비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착수가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속성이란 도박범죄가 2인 이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써 서로의 뜻이 맞는 경우나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가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수범죄는(hidden crime) 숨겨진 범죄라는 뜻대로 범죄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한다. 암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범죄와 관련을 맺은 집단, 즉, 피해자, 범죄자, 소추기관에 있다[28].

2. 사회적 모순

오늘날 도박은 합법적 도박과 불법적 도박이 상존하고 있으며 합법적 도박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합법적 도박은 허용되고 불법적 도박은 처벌받는다. 동일한 유형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지위에 놓여진다.

합법적 도박에서는 불법적 도박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논의의 여지가 없겠으나 양자 모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은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모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반자본주의적 이해관계와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를 국가정책 내에 참여 혹은 배제시키는 선택적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한다. 국가는 재정 적자를 일시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양면적 성격을 갖는 도박을 '이중적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 통제한다. 즉 사적 영역의 오락성 도박을 제외한 나머지 도박은 형법으로 금지시키는 범죄화 과정과 동시에 국가가 운영하거나 허용하는 도박은 탈범죄화 시킴으로서 재정적 위기가 타개하려는 것이다[29].

3. 병적 중독증세

습관적인 도박은 병적 도박증을 유발한다. 병적 도박증(pathological gambling)은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증상으로 강박적 도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커스터(Custer)와 밀트(Milt)는 도박중독증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30]. 첫째, 진행성이다. 일단 도박을 시작하면 도박을 멈추거나 중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심지어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도 도박을 중지하지 못하고 계속하며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는다. 둘째, 손실을 참지 못한다. 사교성 도박자들은 손해를 즐기는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비용으로 보며, 전문 도박사들은 직업상에 따르기 마련인 정상적인 손해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도박중독자들은 손해를 자기 존중감의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셋째, 도박에 대한 집착이다. 병적 도박자들은 항상 도박생각에 집착한다. 다음 도박에 대한 기대와 전략을 세우고, 도박할 돈을 마련할 방도를 궁리하며, 큰돈을 따 빚을 갚거나 벌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있다. 넷째, 해로운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도박을 계속한다.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고 가족에 소홀하게 되었으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병적도박자들은 도박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나 소화성 궤양, 편두통과 같은 질병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기분장애, 알코올 남용이나 마약남용, 반사회적 성격장애, 자기에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의 비율이 높다. 병적 도박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 20%정도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31]. 병적 도박증은 발병하면 치료가 힘들고 재발율이 높다. 현재 다양한 치료기법이 개발되어 있으나 중독에 이르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32].

IV. 경찰의 효율적인 도박범죄 대응방안

1.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 개선

경찰의 효율적인 도박범죄 단속을 위해서 범죄정보의 획득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도박은 필요적 공범으로서 행위자가 모두 범죄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경찰은 별도의 수사단서 확보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보획득 근무유형이다. 관련 법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며 동법 제2조에서 범죄관련정보 수집 · 작성배포는 경찰공무원의 주요 임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경찰공무원은 입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정확한 사회진단에 의한 수사정보를 발굴 · 수집해야 한다.

실제로 경찰공무원은 건문수집및처리요강(예규 제29호)에 정하는 기준건수를 수집보고 하여야 하는데 수사·강력·형사요원은 범죄정보만을 수집보고하고, 지구대요원은 보고 기준건수 중 범죄정보를 2건 이상 포함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이 작성하여 보고하는 범죄정보가 질적으로 너무 낮으므로 수사단서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다.

2005년 9월 경찰청에서 전국 수사·형사 기능의 경찰관 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형식적인 첩보를 제출한다는 응답이 28.7%, 자주 그런 편이다 22.6%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의 59.6%가 제출 의무건을 위한 형식적 첩보제출을 하고 있었다[33]. 결국 현재 경찰의 수사첩보는 본래 취지를 상실한 상태라 보여진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박범죄 수사에 주민의 신고율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첩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 지방청, 일선 경찰서의 수사기능에 범죄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경찰조직내 범죄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분석관리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전담기구의 형태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범죄정보기능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인다.

2.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범죄정보활용의 강화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란 사건수사, 범죄분석, 피해통보, 수사지식정보, 형사사법정보망이 연계·통합된 현재 경찰에서 운용 중인 전산시스템이다.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수사공조를 위한 스피드 수배와 수사협조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데 있다[33]. 이를 이용하면 도박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사요원 상호간 도박범죄의 정보를 교환 또는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수사요원간 자발적인 범죄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34].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경찰청 수사국이 주관하여 정보통신관리실과 교통관리실이 사업추진팀으로 구성·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한 경찰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소극적 활용은 그 자체

로 예산의 낭비가 된다.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요원의 자발적 참여가 유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편리성이 요구된다. 현재 시스템상에는 별도의 범죄정보와 관련된 공간이 없다. 그러므로 메인화면의 수사공조 하위메뉴에 범죄정보에 대한 공간을 마련할 것이 요망된다.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는 범죄정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제공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관리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정보제공자가 공개된다면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3.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의 도박범죄 활용방안 검토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minal Filling Search System)은 수법·마약·변사·조직폭력 영상시스템을 통합하고, 경찰청 주전산기·교통통신망·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수용자료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사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체계로서 형사과에서 구축·운영중인 프로그램이다.(일부개정 2003. 7.22 경찰청훈령 제402호,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2조 제8항)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 장점은 대면범죄인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용의자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확인하여 범인추정을 할 수 있고 수법범죄자 중 범죄특성과 신체적 특징이 확인 가능함에 있다.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 수법이 등록되는 범죄는 강도, 절도, 사기, 위·변조, 약취·유인, 공갈, 방화, 강간, 강간 내지 강도 중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로 국한하고 있다.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로 의율 되므로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 수법이 등록될 수 있으나 기타 도박죄는 수법범죄에 등록조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박죄의 반복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 도박죄도 수법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4.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도박범죄 포함

경찰은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개정 2005. 7.1 경찰청예규 제202호)을 근거로 우범자의 자료보관 및 범죄판형성 여부에 관한 첩보를 수집

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집된 첩보를 통해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은 과거 “우범자관찰보호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명칭이 개정되면서 예규 조항도 상당부분 변경되었다. 그 중에서 도박범죄와 관련된 내용의 변경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에 “우범자관찰보호규칙”에서 우범자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던 도박 범죄경력자가 개정과 함께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 대로라면 도박범죄경력자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기존에 경찰 내부적으로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대상 범죄의 축소를 통하여 실질적인 규칙의 목적달성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와 인권보호를 염두한 신중 어린 개정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우범자의 대상에서 도박범죄를 제외한 것은 현재 도박범죄의 단서부족으로 수사 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라 보여진다. 현재 규칙상 우범자로 규정하고 있는 살인·강도·절도·강간·강제추행·마약류사범에 사기와 도박의 포함이 요청된다.

V. 결 론

도박범죄의 폐단은 증가 일로에 있다. 나아가 도박이 각종 강력범죄를 양산해내는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 단속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도박범죄의 속성상 피해 신고율이 극히 저조하여 그간 경찰의 도박범죄단속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경찰의 도박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분석·관리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 형태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범죄정보기능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도박범죄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정보제공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minal Filling

Search System)을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도박죄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 도박죄도 수법등록이 되어야 한다. 넷째,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우범자의 대상으로 도박범죄가 포함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한국레저산업연구소, 갬블백서, p.9, 2006.
- [2] 문화관광부, 2006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 이승철 외, “한국의 사행산업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년 추계학술세미나 자료집, p.17, 2006.
- [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375772>
- [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8211821091&code=940100.
- [5] <http://www.hani.co.kr/section-021106000/2006/09/021106000200609010625021.html>
- [6] 이대원, “합법적 도박행위:확산,이론 그리고 경험적 검증에 관한 검토”, 사회과학연구, 제42집, pp. 115-116, 2003.
- [7] 경찰청, 경찰백서, p.145, 2005.
- [8] <http://www.encyber.com/>
- [9] 법률 제662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일부개정 2002. 1. 26.
- [10] 진계호, “도박죄에서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 pp.137-138, 1998.
- [11]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p.634, 2003.
- [12] 경찰종합학교, 생활안전경찰, p.157, 2005.
- [13] 대판 1984. 7. 24. 83도 830.
- [14]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p.918, 2002.
- [15] 대판 1984. 7. 24. 83도 830.
- [16]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p.564, 2002.
- [17] 대판 1995. 7. 11. 95도 955
- [18] 진계호, “도박죄에서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 p.147, 1998.

[19]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p.639, 2003.
 [20] 대판 2002. 4. 12. 2001도 5802.
 [21] 경찰종합학교, *생활안전경찰*, p.160, 2005.
 [2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825012003&code=seoul&keyword=도박>
 [2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123888§ion_id=102&menu_id=102
 [24] 이태경, “병적도박과 알코올중독 같은 생리현상”, *과학동아*, p.119, 2003.
 [25] 경찰청, *2005 범죄분석*, p.46, p.1082, 2006.
 [26] 이태경, “병적도박과 알코올중독 같은 생리현상”, p.114, 2003.
 [27] 김정연, “병적도박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p.531, 2004.
 [28] 배종대, *형사정책*, p.54, 2001
 [29] 수사첩보활동규칙, 제3조 - 제5조, 일부개정 1996. 8. 30 경찰청예규 제167호.
 [30] 이흥표, *도박의 심리*, 학지사, p.30, 2002.
 [31] R. Custer and H. Milt, *When Luck Runs Out, Fact on File Publication*, 1985 ; 이흥표, *도박의 심리*, 학지사, pp.64-66, 2002.
 [32]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p.490, 2004.
 [33] 이동환, 표창원, *경찰의 범죄정보수집 및 분석체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5-24, p.110, 2005.
 [34]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매뉴얼*, pp.26-31, 2006.
 [35] 이동환, 표창원, *경찰의 범죄정보수집 및 분석체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5-24, p.128, 2005.

저자 소개

김정규(Joung-gyu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법학사)
- 2002년 8월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06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전임 강사

<관심분야> : 경찰관리, 경찰수사